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56호
2018. 3. 22. (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6810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제6811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6812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7
제6813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제6814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8
제6815호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제6816호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
제6817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제6818호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22
제6819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제6820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6821호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6822호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제6823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제6824호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제6825호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30
제6826호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32
제6827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제6828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제6829호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제6830호 서울특별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제6831호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제6832호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제6833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제6834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43
제6835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제6836호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제6837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제6838호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제6839호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47
제6840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제6841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51
제6842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제6843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53
제6844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제6845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6
제6846호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제6847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제6848호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58
제6849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1
제6850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제6851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62

[입법예고]
제2018-633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74
제2018-736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7
제2018-745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98
제2018-753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1
제2018-755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2

◈고 시
제2018-78호 암사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04
제2018-79호 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17
제2018-80호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고시 ·····124
제2018-81호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124
제2018-82호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127
제2018-84호 국제빌딩주변 및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48

◈공 고
제2018-674호 2018년도 제4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161
제2018-676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63
제2018-691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166
제2018-692호 부동산개발업 위반업체 청문통지 공시송달 ·····167
제2018-695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70
제2018-699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80
제2018-702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18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17. 12. 26.「도시재생법」개정에 따라 “상생협약 체결”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상생협약은 개별당사자의 임의적 사항으로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워 상생협약 체결의 구체적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시켜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과 사용료 면제 등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상생협약 등 지역상생발전 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제16조제2항)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생활환경 개선,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련된 활동으로 하고,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구청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등으로 정함(제26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6843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주거지보전사업”이란 재개발구역에서 기존 마을의 지형, 터, 골목길 및 생활상 등 해당 주거지의 특성 보전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개량 및 건설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거지보전사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및 시기, 매매가격 및 대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매계약은 임대주택의 착공신고를 한 때에 시장과 해당 사업시행자가 체결한다.
2. 매매가격은 영 제68조제2항(대통령령 제28628호)에 따라 정하되, 건축비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은 시장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로 확정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매매대금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계약금은 매매계약 체결하는 때에 총액의 20퍼센트를 지급
   나. 중도금은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 부지의 대지조성을 완료하고, 현황측량 실시 결과를 시장에게 인계한 이후에 총액의 60퍼센트를 지급
   다. 잔금은 법 제83조(법률 제14943호)에 따른 준공인가 이후에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 제86조(법률 제14943호)에 따른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

제38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사비용의 2분의 1까지 주택개량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보조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1. 법(법률 제14943호)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에서 역사·문화적 특성 보전이 필요한 지역 또는 경관지구·고도지구와 같은 규제지역 등
2. 재개발구역 내에서 역사·문화적 특성 보전을 위하여 일부 주택을 존치하는 지역

제6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법률 제14943호)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신축비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공사비

제65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8조제9항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개량비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임대주택의 매매계약에 관한 제23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기존 정주지의 특성을 보전하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매매가격을 현실화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개발구역 내에서 일부 지역을 존치하는 경우 주택개량비용을 보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지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어 정의를 신설함
   나. 주거지보전사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매입시기, 매입가격 등을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과 별도로 정함
   다. 재개발구역 내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위하여 일부 주택을 존치하는 지역에 주택개량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도시정비기금의 사용처에 제38조제9항에 따라 보조하는 주택개량비용을 추가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6844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에는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 표시할 수 있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나.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제28조제2항 전단부 중 “구청장”을 “시장·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